

Step4 야생생물 밀렵신고 포상제도

포상제도란 무엇인가?

-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(고발)하거나 불법포획한 야생생물을 신고한 자 및 불법업구를 수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
- 밀렵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해당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기액 이내로 지급토록 상향(12.7.31 시행)

주요 신고대상 행위

-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·채취하는 행위
-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행위
- 울무·덫·창애 등을 설치하거나 독극물을 살포하는 행위
-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
- 불법포획 야생생물을 가공·판매하는 행위
- 불법업구를 제작·판매하는 행위

주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

-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·채취하는 행위(개체당)
 - 10만원 ~ 200만원
 -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
 - 10만원
 - 불법업구 수거사(1개당)
 - 500원 ~ 3,000원

신고처 야생생물의 밀렵·밀거래를 막아주세요

- 환경신문고 ☎ 국번없이 128
-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☎ 063) 238-8855
- 시·도(군·구) 환경과, 경찰관서
-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☎ 063) 853-7888

밀렵·밀거래등 불법 행위시 처벌규정

•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I급을 포함·채취·훼손하거나 고사시킨자

▶ 5년이하 징역,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

•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I급을 가공·유통·보관·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한 자

▶ 3년이하 징역, 3백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

•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II급을 포함·채취·훼손하거나 고사시킨자

▶ 3년이하 징역, 3백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

•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, 넝, 창애, 올무, 향정,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,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

▶ 3년이하 징역, 3백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

•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II급을 가공·유통·보관·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한 자

▶ 2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 벌금

• 포획·금지대상 야생동물을 허가없이 포획한 자

▶ 2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 벌금

• 포획·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,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을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(음식을 또는 추출기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.)·양도·양수·운반·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

▶ 1년이하 징역, 5백만원이하 벌금

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.

- 전북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☎ 063) 850-0983

야생생물을 보호 함께해요!

야생생물보호의 시작은
밀렵을 근절하고,
밀거래를 차단하는데서
출발합니다.



환경부
새만금지방환경청

Step 1 우리 땅의 야생생물이 사라지고 있어요!

우리나라 야생생물

- 야생생물이란 산과 들, 강 등의 자연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동물·식물 등을 말함.
- 우리나라의 국토의 65%가 산림이고 시계절이 뚜렷하고 자연환경이 다양하여 3만여 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어요.

밀렵·밀거래로 야생생물이 사라지고 있어요!

- 야생생물을 밀렵 : 야생생물을 허가 받지 않고 총기, 올무 등 불법업무로 사냥하는 것
- 야생생물을 밀렵된 야생생물을 일부 건강원, 음식점, 개인 등이 보신문화나 약재 등으로 몰래 유통·판매 구입하는 모든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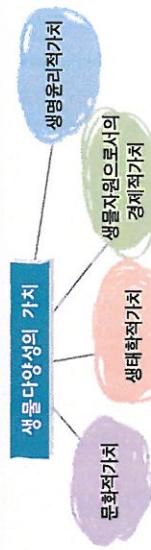
포획이 금지되는 야생동물(485종)

- 포유류(63종) : 두더지, 너구리 등
- 조류(396종) : 소쩍새, 뼈구기 등
- 양서류(10종) : 도룡뇽, 두꺼비 등
- 파충류(16종) : 자라, 도마뱀 등



Step 3 밀렵과 밀거래를 막아 야생생물을 보호 합시다!!

야생생물 밀렵·밀거래를 막아야 하는 이유



1. 야생생물은 자연생태계의 구성원

- 야생생물은 자연에서 막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 수행
- 야생생물을 밀렵 밀거래는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

2. 야생생물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생물자원

- 밀렵·밀거래, 자생수가 한정된 식물의 불법 재취 및 자생자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
-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 정서 적용으로 고유생물 자원에 대한 국가 간 주권 확보 경쟁 치열

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

- 국제적인 생물종 보호 규제에 등장(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(CITES) 가입)
- 지연적,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지정하여 보호

Q1. 야생생물을 먹으면 정말 몸에 좋은가요?

- A1. 정말 잘못된 속설입니다. 뱀, 개구리 등 야생동물들은 정확한 영양성분을 알기 어렵고, 기생충 등의 감염 위험이 큽니다. 또 고지방, 고칼로리 성분이어서 오히려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



Q&A

Q2. 야생생물을 왜 위험한가요?

- A2. 야생생물을 잡기 위한 밀렵도구는 야생동물을 다치고 죽게 만들뿐만 아니라 등산객이나 산에 오르는 주민들에게도 위협이 됩니다.

멸종위기 야생생물(246종)

- 포유류(20종) : 반달가슴곰, 산양, 수달 등
- 조류(61종) : 뜰부기, 애, 황새 등
- 양서류(7종) : 바비리병, 구렁이, 금개구리 등
- 어류(25종) : 미호중개, 암실남자루, 부안종개 등
- 고총류(22종) : 장수하늘소, 비단별레, 수영풍뎅이 등
- 무척추동물(31종) : 나팔고둥, 장수갓조개, 깃산호 등
- 육상식물(77종) : 광릉요강꽃, 나도풀, 흰련 등
- 해조류(2종) : 그물공말, 삼나물말
- 고등균류(1종) : 화경바섯

Q3. 야생생물의 밀렵·밀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

- A3. 「야생생물을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밀렵과 밀거래를 하는 사람, 음식점이나 건강원 등에서 불법포획된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보관·판매·알선하는 사람, 불법포획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세만금자방환경청 홈페이지 www.meo.go.kr/smrg에서 확인 가능